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826
----------	-------

발의연월일 : 2026. 10. 7.

발 의 자 : 서삼석·윤준병·임미애
진선미·허영·박용갑
조인철·박지원·문금주
한민수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김 수출 확대 등으로 김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마른김은 산지에서 생산된 이후 가공·유통되는 과정에서 거래가격과 물량 등 거래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공개되지 않아 객관적인 거래 정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마른김의 거래가격·물량 등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마른김거래소 운영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이에 마른김거래소 운영기관의 지정 및 업무,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거래 참가자의 준수사항, 시장 교란행위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거래소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과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마른김 유통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하고 안정적인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김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마른김거래소 지정, 지정 요건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거래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0조의2).
- 나. 거래소 개설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을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기관이 거래 관리,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운영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의 근거 마련(안 제10조의3).
- 다. 거래소의 공정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거래 참가자의 거래방법, 매입한도 등 거래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0조의4).
- 라. 시장 교란행위 및 거래질서 위반 등에 대한 벌칙을 마련하고,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양벌규정과 과태료 부과 등 근거 마련(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마른김거래소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마른김의 투명한 유통구조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갖추어 신청한 경우 마른김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마른김의 거래·품질검사 등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것
2. 마른김 거래의 공정성·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갖춘 것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려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를 관할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구역에 시·군·구를 두지 아니한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관할 구역의 마른김 생산·가공 및 물류 여건, 거래소의 적정 배치 등을 고려한 검

토의견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거래소의 개설자(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거래소의 운영에 관한 업무규정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거래소의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소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업무규정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거래소가 개장하지 아니한 경우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거래소의 개설자에게 거래소의 개설 및 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 거래소의 개설자는 거래소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거래소 업무규정
2. 운영기관의 선정기준 및 성과평가
3. 수수료·정산 기준 등 주요 운영사항
4. 그 밖에 개설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 이 법에 따른 거래소에 대해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 사항 및 거래소의 지정 절차,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3(거래소 운영기관의 지정 등) ① 거래소의 개설자는 거래소를 운영하려는 자(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청한 경우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마른김의 거래·품질검사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조직을 갖추는 것
2. 그 밖에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는 것

②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마른김을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직접 생산하여 도매하는 업무
2. 반입 마른김에 대한 품질검사의 실시
3. 거래량, 가격, 품질검사 결과 등 마른김 거래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 및 전자적 기록·보관
4. 대금결제 지원을 위한 정산소의 운영·연계 및 거래대금의 정산에 관한 업무
5.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거래소의 개설자에 대한 보고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거래소의 개설자는 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규정에 따른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하게 수행한 경우
4.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운영기관에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운영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운영기관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⑥ 운영기관의 지정 절차, 운영, 재지정, 지정 취소, 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4(거래질서의 유지 등) ① 누구든지 거래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마른김을 매점하거나 그 판매를 기피하여 마른김의 수급 또는 가격을 현저히 교란하는 행

위

2. 시세를 조종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유포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
3. 다른 거래참가자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행위
4. 다른 거래참가자와 통정(通情)하여 미리 정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등 거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

② 거래소에서 마른김을 거래하는 자(이하 “거래참가자”라 한다)는 마른김의 원활한 수급과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거래소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매입한도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③ 거래소의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거래참가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거래참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거래소의 개설자는 거래참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거래 참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 및 제4항에 따른 거래 참가 정지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거래소 지정의 취소

5.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운영기관 지정의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벌칙) ① 제10조의4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마른김의 수급 또는 가격을 현저히 교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0조의4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매입한도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10조의4제4항에 따른 거래 참가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거래에 참가한 자

② 제10조의4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하

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거래소의 개설자가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0조의2(마른김거래소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마른김의 투명한 유통구조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갖추어 신청한 경우 마른김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마른김의 거래·품질검사 등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것 2. 마른김 거래의 공정성·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갖춘 것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려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를 관할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구역에 시·군·구를 두지 아니한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관할 구역의 마른김 생산·가공 및 물류 여건, 거래소의 적정 배치 등을 고려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거래소의 개설자(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거래소의 운영에 관한 업무규정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거래소의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소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업무규정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거래소가 개장하지 아니한 경우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거래소의 개설자에게 거래소의 개설 및 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 거래소의 개설자는 거래소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거래소 업무규정

2. 운영기관의 선정기준 및 성과평가

3. 수수료·정산 기준 등 주요 운영사항

4. 그 밖에 개설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 이 법에 따른 거래소에 대

<신 설>

해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 사항 및 거래소의 지정 절차,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3(거래소 운영기관의 지정 등) ① 거래소의 개설자는 거래소를 운영하려는 자(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청한 경우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마른김의 거래·품질검사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조직을 갖추는 것

2. 그 밖에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는 것

②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마른김을 위탁받아 도매하

거나 이를 매수하여 도매하
거나 직접 생산하여 도매하
는 업무

2. 반입 마른김에 대한 품질검
사의 실시

3. 거래량, 가격, 품질검사 결
과 등 마른김 거래 관련 정
보의 수집·관리 및 전자적
기록·보관

4. 대금결제 지원을 위한 정산
소의 운영·연계 및 거래대
금의 정산에 관한 업무

5.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거래
소의 개설자에 대한 보고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거래소의 개설자는 운영기
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
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
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신 설>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규정에 따른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하게 수행한 경우

4.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운영기관에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운영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운영기관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⑥ 운영기관의 지정 절차, 운영, 재지정, 지정 취소, 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4(거래질서의 유지 등)

① 누구든지 거래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마른김을 매점하거나 그 판매를 기피하여 마른김의 수급 또는 가격을 현저히 교란하는 행위

2. 시세를 조종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유포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

3. 다른 거래참가자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행위

4. 다른 거래참가자와 통정(通情)하여 미리 정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등 거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

② 거래소에서 마른김을 거래하는 자(이하 “거래참가자”라 한다)는 마른김의 원활한 수급과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25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
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거래소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
로 정하는 매입한도 등 준수사
항을 지켜야 한다.

③ 거래소의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거래
참가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거래참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에 따라야 한다.

④ 거래소의 개설자는 거래참
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
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거래 참가의 정
지를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 및 제4항에 따른
거래 참가 정지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청문)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거

<신 설>

<신 설>

<신 설>

래소 지정의 취소

5.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운
영기관 지정의 취소 또는 업
무 정지

제28조(벌칙) ① 제10조의4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마른김의 수
급 또는 가격을 현저히 교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0조의4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제2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
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
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
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

<신 설>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매입한도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10조의4제4항에 따른 거래 참가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거래에 참가한 자

② 제10조의4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거래소의 개설자가 부과·징수한다.